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035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김정재·서일준·유영하

김선교 · 김승수 · 김소희

박성민 · 김미애 · 권영진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이 붕괴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지 닌 지역주민들의 문화·여가의 장이자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지역 고용의 기반으로서 소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형성·발전시켜 온 전통 시장을 유지·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임.

그런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그대로 적용한 결과,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등 전통시장의 유지·발 전에 저해가 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

하고 사용료를 매달 무이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7조의3신설).

법률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보험수익자로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매달 무이자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	현 행	개 정 안
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 나 지방자치단체를 보험수익자 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 또		제17조의3(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및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 또는대부료를 매달 무이자로 납